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문화복지위원회)



충 청 남 도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1. 여성가족정책업무추진	1
2.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3
3. 제 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5
4.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7
5.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9
6.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취업역량강화	11
7. 새일센터 지정운영	13
8.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15
9. 충남 고령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7
10.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9
11.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인건비추가 지원 (도)	21
12.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인건비추가 지원 (시군) ..	23
13.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도)	25

14.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27
15.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9
16.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4개소)	31
1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기능보강)	33
18.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추가지원	35
19.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37
20.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9
21. 피해자 지원 부대비용(과목경정)	41
22.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과목경정)	43
23.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지원(과목경정)	45
24.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과목경정)	47
25.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49
26.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51
27.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지역지정운영	53
28.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운영	55
2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57

3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59
31.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지원	61
3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63
3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65
34. 아이돌봄지원	67
3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9
36. 한국어 문화교실로 하나되기	71
37. 다문화 어린이 축구	73
38.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문화한마당	75
39. 가족센터 건립	77
40.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79
41.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81
4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83
43.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85
44. 시군 어울림마당 운영	87

45.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89
46. 청소년수련시설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91
47. 충청남도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93
48.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95
49.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시설구축 운영	98
50. 학교밖세상소통카드	100
51.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102
5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104
53. 청소년자율소통플라자 그린카페조성 사업	106
54. 청소년 쉼터 운영	108
55.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10
56.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112
57. 시군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114
58.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교구 교체 지원	116

여성가족정책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양성평등촉진
	세부사업	여성정책업무추진활동
	통 계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사업개요

제36조(예산의 편성)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여성가족정책업무추진 ○ 여성가족정책업무 추진 (예산절감) 6,6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650	0	7,000	6,650	-350	0	
국 비	0			0	0		
도 비	6,650		7,000	6,650	-350		
시군비	0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650	6,65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이용문 (행) 4971	김혜지 (행) 2041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양성평등 촉진
	세부사업	여성정책업무 추진 활동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내포신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방향 및 충남형 모델, 경제적 타당성 등 기본 건립 논리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 (여건 변화) 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20.3.6.)로 공공기관 이전을 감안한 '특화가로 조성 (RM 8)' 예정으로 기존 건립예정지(RB 5) 변경 불가피
- 사업 위치 : 내포신도시내 (RM 8구역)
- 사업 기간 : '20.06.~'20.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50,000)
- 사 업 량 : 연구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충남연구원
- 사업 내용 : '신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 여성정책 연구기관 및 가족플라자 현황 조사 · 분석
 -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 방향, 운영 전략 및 충남형 모델 제시
 -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 여건, 타당성 조사 · 분석 및 운영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 제언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호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을 통한 도정정책 개발, 제도개선, 시책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 타당성 기본연구 용역 : 50,000천원 ○ 인건비 : 29,667천원 · 책임연구원(7,752천원) · 연구원(13,373천원) · 연구보조원(8,542천원) ○ 경 비 : 14,265천원 · 여비(2,895천원) · 인쇄비(2,070천원) · 전산처리비(500천원) · 회의비(4,800천원) · 임차료(500천원) · 교통통신비(500천원) · 설문조사비(3,000천원) ○ 이윤 및 부가가치세 : 6,06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0	50,000	5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50,000			50,000	5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정책팀	조광희 (행)635-2040	이용문 (행)635-4971	구용현 (행)635-4982

제 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국가직접지원사업)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양성평등촉진
	세부사업	여성정책업무추진활동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외한인여성의 정체성 제고와 국내외 한인 여성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리솜 라플라스 (충남 예산군 소재)
- 사업 기간 : 2020. 11월 중 (2박3일)
- 예 산 액 : **92,700천원**(도비92,700)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충청남도, 예산군
- 사업 내용 : 글로벌여성리더포럼, 활동분야별 네트워킹, 지역문화탐방 등
- 지원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 제4항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국제협력)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제 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309,000천원 (도비 92,700, 시군비 216,300) ※ 여성가족부 사업대행사 선정 및 직접 집행 309,000천원 별도 ○ 여성가족부, 충청남도, 예산군 공동주체 예산 1:1 부담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9,000	0	0	309,000	309,000	0	신규
국 비	0			0	0		
도 비	92,700			92,700	92,700		
시군비	216,300			216,300	216,3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7%, 시군비 3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이용문 (행) 4971	김혜지 (행) 2041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양성평등 촉진
	세부사업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30청년층에서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불평등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 청년 단체 등과 연계해 성별 갈등 해소 및 풀뿌리 성평등 확산 추진
- 사업 위치 :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충남여성정책개발원 내)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전액 삭감)
 - ※ 증감 사유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감액(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3355(2019.12.20.))
- 사업시행방법 : 지역 거점기관(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보조금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사업 내용 : 청년 네트워크, 청년단체 등과 연계하여 양성평등 의식·문화를 확산하는 공론의 장으로 토크콘서트, 토론회, 포럼, 공모전, 콘텐츠 제작·전시, 문화공연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지원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37조 1항, 2항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없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5,700		35,700	0	△35,700		
국 비	25,000		25,000	0	△25,000		
도 비	10,700		10,700	0	△10,7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양성평등팀	조광희 (행) 2040	정낙도 (행) 4972	서가영 (행) 2042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세부사업	새일센터 지정운영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사업 위치 : 도 직영 광역새일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50,000)
- ※ 증감 사유 : 광역새일센터 일자리 진흥원 이전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일반취업상담사 3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역내 새일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광역 새일센터 종사자에게 인건비 지급
- 지원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 100,000천원(국50,000 도50,000) ○ 대상 : 도 직영센터 기간제 직원 ○ 인건비 : 100,000천원 · 본봉 1,846천원 × 12개월 × 3명 = 66,456천원 · 활동경비 100천원 × 12개월 × 3명 = 3,600천원 · 4대보험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347천원 × 12개월 × 3명 = 12,492천원 ·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 등 = 17,45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158,220	100,000	-58,220	0	계속
국 비	50,000		79,110	50,000	-29,110		국고
도 비	50,000		79,110	50,000	-29,11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6,250	41,269	14,981	73%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양성평등팀	조광희 (행) 2040	정낙도 (행) 4972	전가을 (행) 4995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취업역량강화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세부사업	새일센터 지정운영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취업실적 향상
- 사업 위치 : 도 직영 광역새일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원(전액삭감)
 - ※ 삭감 사유 : 선임 취업상담사 미채용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선임 취업상담사 직책수당 지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광역새일센터를 총괄하는 선임 취업상담사에게 직책수당 지급
- 지원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취업역량강화 ○ 대상 : 도 직영센터 기간제 직원 ○ 2,400천원 · 직책수당 : 200천원 × 1명 × 12개월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0	2,400	0	-2,4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0		2,400	0	-2,4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	2,960	40	98.6%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양성평등팀	조광희 (행) 2040	정낙도 (행) 4972	전가을 (행) 4995

새일센터 지정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세부사업	새일센터 지정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사업 위치 : 10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홍성)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761,347천원**(국2,333,367 도427,980)
 - ※ 증감 사유 :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새일센터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0개 시군
- 사업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새일센터 지정운영 : 3,626,368천원(국2,333,367 도427,980 시군865,021) ○ 직업교육훈련 : 439,166천원 ○ 새일여성인턴 : 1,002,000천원 ○ 새일센터운영비 : 2,185,202천원 ·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 1,637,662천원 · 사업관리비 및 사후관리 사업비 : 291,000천원 · 경력단절예방 사업비 : 55,200천원 · 비정규직 처우개선 : 55,200천원 · 성과운영비 : 146,14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626,368	0	3,667,254	3,626,368	-40,886	0	계속
국 비	2,333,367		2,408,114	2,333,367	-74,747		국고
도 비	427,980		414,214	427,980	13,766		
시군비	865,021		844,926	865,021	20,095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64%, 도비 12%, 시군비 2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9,250	44,229	15,021	75%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양성평등팀	조광희 (행) 2040	정낙도 (행) 4972	전가을 (행) 4995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세부사업	새일센터 지정운영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광역새일센터 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총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기간 : 2020. 상반기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18,070천원**(국109,035 도109,035)
- ※ 증감 사유 : 광역새일센터 일자리진흥원 이관에 따른 통계목 변경
- 사 업 량 : 새일센터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지역 내 새일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광역 새일센터 운영
- 지원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 218,070천원(국109,035 도109,035) ○ 일자리진흥원 위탁 운영비 : 218,07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18,070	0	0	218,070	218,070	0	계속
국 비	109,035		0	109,035	109,035		국고
도 비	109,035		0	109,035	109,035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85%, 도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양성평등팀	조광희 (행) 2040	정낙도 (행) 4972	전가을 (행) 4995

충남 고령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세부사업	여성사회참여 유도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령사회의 인권증진과 보편적 복지, 성평등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주체적인 연대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0. 5. 1. ~ 11. 30.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10,000)
- 사 업 량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 발굴 권역별 토론회 4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충남여성(충남고사리)
- 사업 내용 : 고령사회 대비 정책발굴 토론회,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 여성의 현황조사
- 지원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 : 12,500천원 (도비10,000 자부담 2,500) ○ 고령사회 대비 정책발굴 토론회 : 10,000천원 · 권역별 토론회 2,500천원 × 4회 = 10,000천원 ○ 충남도 고령인구 현황조사 · 충남 (고령)여성 현황조사 및 연구 활동 1식 = 2,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500	0	0	12,500	12,500	0	신규
국 비	0	0	0		0		
도 비	10,000	0	0	10,000	10,000		
시군비	0	0	0		0		
기 타	2,500	0	0	2,500	2,500		

* 보조율 : 도비 80%, 기타(자부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이용문 (행) 4971	강현주 (행) 4983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세부사업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
- 사업 위치 : 3개 시군(서산, 당진, 부여)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72,576천원**(국비 172,576)
- ※ 증감 사유 :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군
- 사업 내용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지원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172,576천원(국비 172,576) ○ 인건비 및 운영비 · 2인 기준 88,466천원 x 1개소 = 88,466천원 · 1인 기준 일반형 42,559천원 x 1개소 = 42,559천원 농어촌형 41,551천원 x 1개소 = 41,55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72,576	0	209,485	172,576	-36,909	0	계속
국 비	172,576		209,485	172,576	-36,909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6,425	206,425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양성평등팀	조광희 (행) 2040	정낙도 (행) 4972	전가을 (행) 4995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인건비추가 지원 (도)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추 가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 사업 위치 : 공주시 월송동 무령로 592(1366센터) /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해바라기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1,200천원**(도비 101,200)
- ※ 증감 사유 : 1366충남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여가부 인건비 기준통보에 따라 차액분 증액 편성
- 사 업 량 : 2개소, 30명(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충남해바라기센터)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충남해바라기센터
- 사업 내용 :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 지원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도) (총 30명) : 101,200천원 ○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101,200천원 - (해바라기센터) 13명 × 173천원 × 12개월 ≒ 27,000천원 - (여성긴급1366) 17명 × 364천원 × 12개월 = 74,2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1,200		93,258	101,200	7,942		
국 비							
도 비	101,200		93,258	101,200	7,942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E=A-B-C)	비 고
2019	94,020	94,02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실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광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최은미 (행) 4993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인건비추가 지원 (시군)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추 가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 사업 위치 : 12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86,198천원(도비 186,198)**
 - ※ 증감 사유 : 여성권익증진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통보에 따라 차액분 증액 편성
- 사 업 량 : 33개소(174명 / 가정·성폭력상담소 24, 보호시설 5, 성매매시설 2, 폭력피해이주여성 2)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2개 시군
- 사업 내용 : 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 지원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시군) : 620,660천원(도비 186,198 시군비 434,462) ○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총 174명) - 174명 × 297.2천원 × 12개월 = 620,66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20,660	0	600,660	620,660	20,000	0	
국 비					0		
도 비	186,198		180,198	186,198	6,000		
시군비	434,462		420,462	434,462	14,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E=A-B-C)	비 고
2019	180,450	174,434	6,0160	96.7%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실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 광 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최 은 미 (행) 4993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도)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및예방
	세부사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사회복지시설등과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권익증진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사업 위치 : 공주시 월송동 무령로 592(1366센터) /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해바라기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5,640천원**(도비 45,640)
- ※ 증감 사유 : 해바라기센터, 1366충남센터 종사자 근무연수 증가에 따른 처우개선비 증액편성
- 사 업 량 : 2개소(30명) / 1366충남센터 17명, 해바라기센터 13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해바라기센터
- 사업 내용 :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2.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여성권익보호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45,640천원(도비 45,640) ○ 이용시설 : 천원 (30명) - 3년미만 : 11명 × 90천원×12월 = 11,800천원 - 3년이상 5년미만: 1명 × 120천원×12월 = 1,440천원 - 5년이상 : 18명 × 150천원×12월 = 32,400천원			
	근무연수	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
	생활시설	10만원/인	15만원/인	18만원/인
	이용시설	9만원/인	12만원/인	15만원/인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5,640	0	42,840	45,640	2,800	0	
국 비	0				0		
도 비	45,640		42,840	45,640	2,8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1,760	41,76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 광 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최 은 미 (행) 4993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비 미지원 상담소(가정폭력·성폭력·통합)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폭력예방 및 피해자 인권신장을 통한 건강한 사회육성
- 사업 위치 : 시군(천안, 금산, 청양, 홍성, 예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110,082천원**(도비 110,082)
 - ※ 증감 사유 : '20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상의 상담소 지원기준액 반영하여 증액함
- 사 업 량 :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시군
- 사업 내용 : 상담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사업비, 홍보비, 관리비) 지원
- 지원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6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550,416천원(도비 110,082, 시군비 440,334) ○ 가정폭력 상담소 122,201천원 × 3개소 = 366,603천원 (종사자 각각 4인) ○ 성폭력 상담소 119,710천원 × 1개소 = 119,710천원 (종사자 4인) ○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64,103천원 × 1개소 = 64,103천원 (종사자6인) ※ 통합상담소 운영비 중 성폭력 해당분은 국비 지원 받으므로, 가정폭력 해당분 만 지원(통합상담소 운영비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50,416		514,350	550,416	36,066		
국 비							
도 비	110,082		102,870	110,082	7,212		
시군비	440,334		411,480	440,334	28,854		
기 타							

* 보조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5,769	85,769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 광 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정 찬 호 (행) 4988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정폭력 상담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폭력예방 및 피해자 인권신장을 통한 건강한 사회육성
- 사업 위치 : 7개 시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72,311천원**(국비 648,208, 도비 324,103)
 - ※ 증감 사유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1인 추가배치 선정(5개소)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반영
- 사 업 량 : 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7개 시군
- 사업 내용 : 상담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사업비, 홍보비, 관리비) 지원
- 지원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1,296,414천원(국비 648,208, 도비 324,103, 시군비 324,103) ○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183,813천원 × 3개소 = 551,439천원 ○ 가정폭력 상담소 122,201천원 × 5개소 = 611,005천원 ○ 상담원 1인 추가배치 인건비 26,794천원 × 5개소 = 133,97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296,414		1,162,444	1,296,414	133,970		
국 비	648,208		581,223	648,208	66,985		기금
도 비	324,103		290,610	324,103	33,493		
시군비	324,103		290,611	324,103	33,492		
기 타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21,474	821,474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 광 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정 찬 호 (행) 4989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4개소)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및 주거지원 시설 입주자 대상 직업훈련으로 자립능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원만하고 신속한 사회복귀 도모
- 사업 위치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647천원**(국비 9,592, 도비 2,055)
※ 증감 사유 : 국비확정내시 및 교부결정에 따른 감액 반영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군
- 사업 내용 :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교육비, 학원비, 교통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13,703천원(국비 9,592, 도비 2,055, 시군비 2,056) ○ 3,425천원 × 4개소 ≒ 13,70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3,703		16,714	13,703	△3,011		
국 비	9,592		11,700	9,592	△2,108		기금
도 비	2,055		2,507	2,055	△452		
시군비	2,056		2,507	2,056	△451		
기 타							

* 보조율 : 기금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629	12,629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 광 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정 찬 호 (행) 498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기능보강)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기능보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입소자들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6,550천원**(국비 17,700, 도비 8,850)
 - ※ 증감 사유 : 보호시설 2개소 추가 수요 충족을 위해 여가부 유보액 확보함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 사업 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자재 보강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지원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35,400천원(국비 17,700, 도비 8,850, 시군비 8,850) ○ 복사기 및 컴퓨터 교체 3,000천원 × 1개소 = 3,000천원 (천안) ○ 도배장판 개보수 및 의자교체 2,000천원 × 1개소 = 2,000천원 (천안) ○ 도시가스 배관 공사 18,000천원 × 1개소 = 18,000천원 (공주) ○ 컴퓨터, 옷장, 이불장, 좌식화장대 교체 12,400천원 × 1개소 = 12,400천원 (논산)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5,400	0	19,100	35,400	16,300	0	기금
국 비	17,700		9,550	17,700	8,150		
도 비	8,850		4,775	8,850	4,075		
시군비	8,850		4,775	8,850	4,075		
기 타	0				0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750	18,75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 광 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정 찬 호 (행) 4988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추가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보증금
	통 계 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 사업 위치 : 천안시, 공주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303천원**(국비 4,303)
- ※ 증감 사유 : ‘20년도 계약만료 주거지원 시설의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인상소요액 지원을 위해 편성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공주시
- 사업 내용 : 공동생활홈 운영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근거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재계약 보증금 인상액 : 4,303천원 (국비 4,303) ○ 계약만료시설 12호(천안 3, 공주 9) X 호별 보증금 인상예상액 360천원 ≒ 4,30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303			4,303	4,303		
국 비	4,303			4,303	4,303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	2,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 광 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정 찬 호 (행) 4988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
- 사업 위치 :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594,320천원**(국비 297,160, 도비 297,160)
※ 증감 사유 : 국비 대 지방비 5:5 매칭을 맞추기 위한 여가부 변경내시 반영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 사업 내용 : 1366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지원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지원 : 594,320천원(국비 297,160 도비 297,160) ○ 운영비 139,400천원 ○ 인건비 454,920천원 - 센터장 : 1 * 32,136 = 32,136천원 - 전문상담원 : 8 * 26,424 = 211,392천원 - 현장상담원 : 8 * 26,424 = 211,39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94,320		594,310	594,320	10		계속
국 비	297,160		297,150	297,160	10		기금
도 비	297,160		297,160	297,160	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기금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68,822	568,822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 광 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정 찬 호 (행) 4988

성폭력상담소 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성폭력피해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심리치료, 의료비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 지원
- 사업 위치 : 6개 시군(천안, 공주, 아산, 예산, 홍성, 태안)
- 사업 기간 : 20.01.01. ~ 20.12.31.(계속사업)
- 예 산 액 : **865,546천원**(국비 577,031 도비 288,515)
 - ※ 증감 사유 : 아산 성폭력 상담소 1개소 국비 지원 확정으로 국비증액에 따라 89,782천원 증액
- 사 업 량 : 9개소(천안3, 공주1, 아산2, 홍성1, 예산1, 태안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지원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6조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1,154,062천원(국비 577,031, 도비 288,515 시군비 288,516) ○ 인건비 및 운영비 - 일 반 상담소 : 119,710×7개소 = 837,970천원 - 장애인 상담소 : 158,046천원×2개소 = 316,09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154,062	0	1,034,352	1,154,062	119,710	0	
국 비	577,031		517,176	577,031	59,855		기금
도 비	288,515		258,588	288,515	29,927		
시군비	288,516		258,588	288,516	29,928		
기 타	0				0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79,252	679,252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광희 (행) 2040	김인기 (행) 4973	최은미 (행) 4993

피해자 지원 부대비용 (과목경정)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심리치료, 의료비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단국대학교병원 內 소재)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61,548천원**(국비 323,084 도비 138,464)
 - ※ 감액 사유 : 부기사업 피해자 **부대비용(8,820천원)**을 여가부 지원계획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비용 부대비용 세부사업으로 과목 변경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3자 공동운영(충남도, 단국대병원, 충남지방경찰청)
- 사업시행주체 : 충남해바라기센터
- 사업 내용 :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지원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 461,548천원(국비 323,084 도비 138,464) ○ 인건비 및 운영비 : 461,548천원×1개소 = 461,54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61,548	0	470,368	461,548	-8,820	0	
국 비	323,084		329,258	323,084	-6,174		기금
도 비	138,464		141,110	138,464	-2,646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기금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광희 (행) 2040	김인기 (행) 4973	최은미 (행) 4993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과목경정)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해바라기센터운영지원
	통 계 목	민간지원사업보조(이전지원) (402-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해바라기센터의 통합형 전환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환경을 갖춰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2차 피해방지에 기여
- 사업 위치 :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단국대학교병원 內 소재)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신규)
- 예 산 액 : **0천원**
※ 감액 사유 : e-나라도움 도입에 따라 1개의 세부사업에 2개의 국비사업 통계목이 불가하여 통계목을 분리하고자 감액하고 해바라기센터,보호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함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주체 : 충남해바라기센터
- 사업 내용 :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 지원
- 지원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없음	
총사업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328,000	0	-328,000	0	
국 비	0		164,000		-164,000		기금
도 비	0		164,000		-164,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기금 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광희 (행) 2040	김인기 (행) 4973	최은미 (행) 4993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지원 (과목경정)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비용, 부대비용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성폭력 피해자에게 돌봄비용 및 피해자 부대비용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단국대학교병원 內 소재)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220천 원**(국비 6,574 도비 2,646)
 - ※ 감액 사유 : 세부사업 해바라기센터운영지원 부기사업 피해자 **부대비용(8,820천원)**을 여가부 지원계획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비용 부대비용 세부사업으로 과목 변경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3자 공동운영(충남도, 단국대병원, 충남지방경찰청)
- 사업시행주체 : 충남해바라기센터
- 사업 내용 :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및 피해자 부대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료비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해바라기센터) 9,220천원(국비 6,574 도비 2,646) ○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지원 : 400천원×1개소 = 400천원 ○ 피해자 지원 부대비용 : 8,820천원×1개소 = 8,82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220	0	400	9,220	8,820	0	
국 비	6,574		400	6,574	6,174		기금
도 비	2,646			2,646	2,646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400	4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광희 (행) 2040	김인기 (행) 4973	최은미 (행) 4993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과목경정)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통 계 목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2-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해바라기센터의 통합형 전환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환경을 갖춰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2차 피해방지에 기여
- 사업 위치 :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단국대학교병원 內 소재)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신규)
- 예 산 액 : **328,000천원**(국비 164,000 도비164,000)
 - ※ 감액 사유 : e-나라도움 도입에 따라 1개의 세부사업에 2개의 국비사업 통계목이 불가하여 통계목을 분리하고자 감액하고 해바라기센터,보호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함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주체 : 충남해바라기센터
- 사업 내용 :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 지원
- 지원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 328,000천원(국비 164,000, 도비 164,000) ○ 기능보강(통합형기능 전환에 따른 증·개축) 1식 * 328,000 = 32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28,000	0	0	328,000	328,000	0	
국 비	164,000		0	164,000	164,000		기금
도 비	164,000		0	164,000	164,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광희 (행) 2040	김인기 (행) 4973	최은미 (행) 499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성매매 피해여성을 시설에 보호하여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 사업 위치 : 시군(천안시, 공주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12,167천원**(국비 238,163, 도비 74,004)
※증감사유 : 기금 교부결정에 따른 조정 반영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및 상담, 아웃리치(현장상담), 관련기관 · 시설에 자활지원 · 의료 · 법률 서비스 연계망 구축, 주거지원
- 지원 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지원시설의 운영) ①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 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386,170천원(국비 238,163 도비 74,004, 시군비 74,003) ①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 ○ 160,780(상담소) × 1식 = 160,780천원 -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보험 및 기타 수용비 등 ②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쉼터)운영비 ○ 171,245천원(쉼터) × 1식 = 171,245천원 -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종사자 상해보험 및 기타 수용비 등 ③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그룹홈)운영비 ○ 54,145천원 × 1식 = 54,14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86,170	0	391,623	386,170	-5453	0	계속
국 비	238,163		241,993	238,163	-3,830		기금
도 비	74,004		74,815	74,004	-811		
시군비	74,003		74,815	74,003	-812		
기 타	0				0		

* 보조율 : 지원시설(기금 70%, 도비 15%, 시군비 15%) / 상담소(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98,022	298,022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 광 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전 선 미 (행) 2043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및예방
	세부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한 인권보호
- 사업 위치 : 시군(천안시)
- 사업 기간 : 2020. 4.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1,032천원**(국비 140,688, 도비 70,344)
※중감사유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여성가족부 확대신설로 인한 신규상담소 설치)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동반아동)에게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출국지원, 보호시설 연계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운영 281,376천원(국비 140,688, 도비 70,344, 시군비 70,344) ○ 인건비(8명) : 216,488천원 ○ 운영비 : 30,000천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 34,88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81,376	0	0	281,376	281,376	0	계속
국 비	140,688		0	140,688	140,688		기금
도 비	70,344		0	70,344	70,344		
시군비	70,344		0	70,344	70,344		
기 타	0				0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0	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 광 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전 선 미 (행) 2043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지역지정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정운영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 사업 위치 :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0,510천원**(국비 35,255, 도비 35,255)
※중감사유 : 국비보조금 보조결정에 따른 조정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공모선정)
- 사업 내용 : 성폭력예방교육 비 의무 일반도민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벽지·산간오지, 읍·면·동 등 우선 교육 필요지역을 지정하여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
- 지원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 70,510천원(국비 35,255, 도비 35,255) ○ 인건비 : 26,300천원 ○ 강사지원비 : 32,250천원 ○ 업무보조원비 : 950천원 ○ 교육지원경비 : 2,139천원 ○ 운영경비 4,062천원 ○ 교통통신비 4,809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0,510	0	88,300	70,510	-17,790	0	계속
국 비	35,255		44,150	35,255	-8,895		기금
도 비	35,255		44,150	35,255	-8,895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6,700	66,7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 광 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전 선 미 (행) 2043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 사업 위치 :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500천원**(국비 3,750, 도비 3,750)
※중감사유 : 국비보조금 보조결정에 따른 조정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공모선정)
- 사업 내용 : 가정폭력예방교육 비의무 일반도민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벽지·산간오지, 읍·면·동 등 우선 교육 필요지역을 지정하여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
- 지원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 7,500천원(국비 3,750, 도비 3,750) ○ 강사지원비 : 4,500천원 ○ 운영경비 : 1,480천원 ○ 강사역량강화비 : 801천원 ○ 교통통신비 719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500	0	4,375	7,500	3,125	0	계속
국 비	3,750		4,375	3,750	-625		
도 비	3,750		0	3,750	3,75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855	8,855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조 광 희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전 선 미 (행) 204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통하여 가족 생활의 안정 및 조기 자립 도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자의 신체·정신적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강화
- 사업 위치 : 3개 시군(천안, 계룡, 서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358천원(국비 15,660, 도비 4,698)
 - ※ 증감 사유 : 상담치료 지원 단가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모자 및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세대당 870천원→874천원,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인당 435천원→437천원)
- 사 업 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군(천안, 계룡, 서천)
- 사업 내용 :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의 심리치료를 위한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미혼모자 의료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상담·의료 지원 :31,320천원 (국비 15,660, 도비 4,698, 시군비 10,962) ○ 상담치료 지원(4개소) 25,360천원 + 의료비 지원(1개소) 5,960천원 = 31,32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1,320		31,200	31,320	120		계속
국 비	15,660		15,600	15,660	60		기금
도 비	4,698		4,680	4,698	18		
시군비	10,962		10,920	10,962	42		
기 타							

* 보조율 : 기금 50 %,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5,286	25,286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김연화 (행) 204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원 인력경비 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원 인력경비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사회복지무원을 배치하여 시설 복지업무 지원
- 사업 위치 : 서천 에벤에셀모자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238천원**(국비 7,238)
- ※ 증감 사유 : 보수 총액 조정 및 피복비 단가 수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 사 업 량 : 사회복지무원 1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지무원의 인력경비 지원(급여, 교통비, 피복비 등)
- 지원 근거 : 사회복지무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제1항

사회복지무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보수지급)

①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별표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사회복지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배치 사회복지무원 인력경비 지원 : 7,238천원 ◦ 1명 7,238천원 = 보수(5,895천원)+여비(627천원)+직무교육비(400천원)+피복비(31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238		7,419	7,238	△181		계속
국 비	7,238		7,419	7,238	△181		기금
도 비				0			
시군비				0			
기 타							

* 보조율 : 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김연화 (행) 2044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도)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에 거점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맞춤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사업 위치 : 도내 전역(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0,200천원**(국비 20,100, 도비 20,1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아산시)
- 사업 내용 : 우리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15개 시·군센터의 사업지원
- 지원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 1항 및 6항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 40,200천원(국비 20,100 도비 20,100) ○ 전담인력 인건비(급여, 보험료, 퇴직금 등) · 2,638,000원×1명×12개월 = 31,656,000 ○ 사업 운영비(기관운영비, 회의비,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프로그램 개발비, 직원 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 · 712,000원×12개월 =8,54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200		39,200	40,200	1000		계속
국 비	20,100		19,600	20,100	500		기금
도 비	20,100		19,600	20,100	500		
시군비				0			
기 타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9,200	39,2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3)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강혜련 (행) 4997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 위치 : 2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75,700천원**(국비 289,000 도비 86,700)
 - ※ 증감사유 : 여가부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가족상담전문인력 4명 예산 반영, 1명당 4천만원 지원)
- 사 업 량 : 2개 시·군(천안, 당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2)
- 사업 내용 : 부모교육, 가족상담,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족 프로그램 제공
- 지원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578,000천원(국비 289,000, 도비 86,700, 시군비 202,300) ○ 2개소 × 289,000천원 : 57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78,000		418,000	578,000	160,000		계속
국 비	289,000		209,000	289,000	80,000		기금
도 비	86,700		62,700	86,700	24,000		
시군비	202,300		146,300	202,300	56,000		
기 타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64,940	264,940	0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미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최수희 (행) 4986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 제공
- 사업 위치 : 13개 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130,387천원**(국비 2,407,990 도비 722,397)
 - ※ 증감사유 : 여가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추가사업비, 정규직전환비용, 가족상담인력 예산 포함)
- 사 업 량 : 13개 시·군(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3)
- 사업 내용 : 부모교육, 가족상담, 다문화가정 언어지원, 가족문화 등 가족 프로그램 제공
- 지원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815,980천원(국비 2,407,990, 도비 722,397, 시군비 1,685,593) ○ 13개소 × 370,460천원 : 4,815,98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815,980		4,193,420	4,815,980	622,560		계속
국 비	2,407,990		2,096,710	2,407,990	311,280		기금
도 비	722,397		629,013	722,397	93,384		
시군비	1,685,593		1,467,697	1,685,593	217,896		
기 타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54,502	2,754,502	0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미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최수희 (행) 4986

아이돌봄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아이돌봄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886,253천원**(국비 13,160,021, 도비 1,726,232)
 - ※ 증감사유 : 여가부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사업비), 도·시군비 비율 수정(광역거점센터)
- 사 업 량 : 1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3)
- 사업 내용 : 소득기준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차등 지원
- 지원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제1항

아이돌봄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아이돌봄지원사업 : 18,800,030천원(국비 13,160,021 도비 1,726,232, 시군비 3,913,777) ○ 15개 시·군 × 1,253,335천원 ≒ 18,800,03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8,800,030		18,781,497	18,800,030	18,533		계속
국 비	13,160,021		13,147,048	13,160,021	12,973		
도 비	1,726,232		1,690,334	1,726,232	35,898		
시군비	3,913,777		3,944,115	3,913,777	-30,338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사업비), 국비 70%, 도비 30%(광역거점센터)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3,328,269	13,328,269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미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최수희 (행) 498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
- 사업 위치 : 10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67,321천원**(국비 667,170 도비 200,151)
 - ※ 중감사유 : 여가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추가인력 인건비 개소당 6,000천원 반영)
- 사 업 량 : 10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 금산, 부여, 홍성, 태안)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월~금 10시~18시(평일저녁 및 주말 등 탄력적 운영가능)
- 사업 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 지 원 근 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동육아나눔터 : 1,334,340천원(국비 667,170, 도비 200,151, 시군비 467,019) ○ 공동육아나눔터 · 49,420천원 * 27개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334,340		1,172,340	1,334,340	162,000		계속
국 비	667,170		586,170	667,170	81,000		기금
도 비	200,151		175,851	200,151	24,300		
시군비	467,019		410,319	467,019	56,700		
기 타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E=A-B-C)	비 고
2019년	620,685	620,685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최수희 (행) 4986

한국어 문화교실로 하나되기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이 불편하여 소외되고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범 실시하여 다른 읍·면으로 전파할 수 있는 모델 발굴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신규사업)
- 예 산 액 : **18,000천원**(도비 18,000)
- 사 업 량 : 1개 지역(성환읍)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소외지역 다문화 한국어문화교실 프로그램
- 지원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한국어 문화교실로 하나되기 : 36,000천원(도비 18,000천원, 시군비 18,000천원) ○ 한국어 문화교실 : 7,200천원 × 5회 = 3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6,000			36,000	36,000		신규
국 비							
도 비	18,000			18,000	18,000		
시군비	18,000			18,000	18,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3)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강혜련 (행) 4997

다문화 어린이 축구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글로벌 유소년 성장발달 주기에 따른 기초체력증진 활동과 축구교실을 통한 다문화 및 비다문화 청소년, 중도입국자녀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사업 위치 :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신규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도비 25,000)
- 사 업 량 : 2개소(둔포면, 신창면 일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다문화 및 외국인 밀집지역에 청소년 대상 건강한 신체증진활동 축구교실, 부모간담회, 지역 내 축구팀과 연계 축구대회, 충남지역 축구대회 아산대표팀 소속 출전
- 지원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다문화 어린이 축구 : 50,000천원(도비 25,000천원, 시군비 25,000천원) ○ 다문화 축구교실 : 50,000천원 ×1식= 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50,000	0		신규
국 비							
도 비	25,000			25,000	0		
시군비	25,000			25,000	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3)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강혜련 (행) 4997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문화한마당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 및 다문화가족이 중심이 되는 문화행사로 다문화가족 자긍심 고취
- 사업 위치 :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신규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도비 25,000)
- 사 업 량 : 5개 읍·면·동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문화공연,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문화체험 부스 및 맞춤형 복지 상담창구 운영
- 지원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문화한마당 50,000천원(도비 25,000천원, 시군비 25,000천원) ○ 소통공감 문화한마당 : 10,000천원 × 5개 (읍면동) = 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50,000	50,000		신규
국 비							
도 비	25,000			25,000	25,000		
시군비	25,000			25,000	2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3)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강혜련 (행) 4997

가족센터 건립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가족센터 건립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족상담, 교육, 돌봄 등 가족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족센터 설치
지원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홍성군
- 사업 기간 : 2019 ~ 2021년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000천원**(국비 1,000,000)
※ 증감사유 :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이월(10억)에 따른 반영
- 사 업 량 : 1개 시군(홍성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 사업 내용 : 가족교육, 돌봄, 상담, 교류소통을 위한 공간 설치비 지원
- 지 원 근 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가족센터 건립 : 2,000,000천원(국비 1,000,000 시군비 1,000,000) ○ 가족센터 건립 · 2,000,000천원 * 1개소(홍성군)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8,500,000	7,496,000		1,000,000	1,000,000	10,040,000	계속
국 비	5,000,000	2,496,000		1,000,000	1,000,000	1,504,000	균특
도 비							
시군비	13,500,000	5,000,000				8,50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E=A-B-C)	비 고
2019	2,496,000	2,496,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최수희 (행) 4986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정책사업	다문화가정활성화 및 지원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문화가정활성화
	세부사업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통·번역,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2,762,347천원**(국비 2,124,882, 도비 637,465)
- 사 업 량 : 14개소(통번역지원사 18명), 13개소(언어발달지도사 18명), 12개소(이중언어코치 16명), 15개소(방문교육지도사 117명), 13개소(사례관리사 16명), 한국어교육(1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방문교육사업 · 사례관리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한국어 교육 등 제공
- 지원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 4항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다문화 특성화 사업 : 4,249,764천원(국비 2,124,882, 도비 637,465, 시군비 1,487,417)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사업 ○ 16,374천원 × 117명 = 1,915,758천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 30,649천원 × 16명 = 490,384천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 27,509천원 × 18명 = 495,162천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32,820천원 × 18명 = 590,760천원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 28,325천원 × 16명 = 453,200천원 ■ 한국어 교육 운영 ○ 20,300천원 × 15시군 = 304,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249,764		4,245,399	4,249,764	4,365		계속
국 비	2,124,882		2,122,700	2,124,882	2,182		기금
도 비	637,465		636,810	637,465	655		
시군비	1,487,417		1,485,889	1,487,417	1528		
기 타				-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667,085	3,667,085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강혜련 (행) 4997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정책사업	다문화가정활성화 및 지원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문화가정활성화
	세부사업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적으로 다문화 공존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제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능동적, 자립적인 일원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29,250천원**(국비 22,500 도비 6,750)
- 사 업 량 : 1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시설, 모임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추진
- 지원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45,000천원 (국비 22,500, 도비 6,750, 시군비15,750) ○ 3,000천원 × 15시군 = 4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5,000		44,850	45,000	150		신규
국 비	22,500		22,425	22,500	75		기금
도 비	6,750		6,728	6,750	22		
시군비	15,750		15,697	15,750	53		
기 타				-			

* 보조율 :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조광희 (행) 2040	박일순 (행) 4974	강혜련 (행) 499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과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23개소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818,227천원**(국비1,818,227)
- ※ 증감 사유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 사 업 량 : 15개 시군, 23개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 노출 예방
- 지원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청소년기본법 제48조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법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3,636,454천원(국비 1,818,227 시군비 1,818,227) ○ 70,792×1개소=70,792천원 ○ 89,252×1개소=89,252천원 ○ 111,326×1개소=111,326천원 ○ 115,126×1개소=115,126천원 ○ 165.172×6개소=991,032천원 ○ 170,222×5개소=851,110천원 ○ 173,452×4개소=693,808천원 ○ 178,502×4개소=714,00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636,454	0	3,089,742	3,636,454	169,698		
국 비	1,818,227		1,733,378	1,818,227	84,849		기금
도 비					0		
시군비	1,818,227		1,733,378	1,818,227	84,849		
기 타					0		

* 보조율 : 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49,792	1,549,792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육소현 (행) 4991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정책사업	청소년보호 및 육석
	단위사업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청소년진흥원 운영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내포신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 건립방
향 및 충남형 모델, 경제적 타당성 등 기본 건립 논리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여건 변화) 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20.3.6.)로 공공기관 이전을 감안한 '특화
가로 조성 (RM 8)' 예정으로 기존 건립예정지(RB 5) 변경 불가피
- 사업 위치 : 내포신도시내 (RM 8구역)
- 사업 기간 : '20.06.~'20.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 50,000)
- 사 업 량 : 연구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충남연구원
- 사업 내용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환경 분석(내포신도시로의 이전에 따른)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 방향, 운영 전략 및 충남형 모델 제시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 여건, 타당성 조사·분석 및 운영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 제언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호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연구·조사·
검사·평가·개발 등을 통한 도정정책 개발, 제도개선, 시책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 건립 타당성 기본연구 용역 : 50,000천원 ○ 내부 인건비 : 29,666천원 · 책임연구원(7,751천원) · 연구원(13,373천원) · 연구보조원(8,542천원) ○ 소요경비 : 14,265천원 · 여비(2,895천원) · 도서인쇄비(2,070천원) · 전산처리비(500천원) · 회의운영비(4,800천원) · 설문조사비(3,000천원) · 임차료(500천원) · 교통통신비(500천원) ○ 이윤 : 1,568천원 ○ 부가가치세 : 4,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0	50,000	5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50,000			50,000	5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2040	양승주 (행) 4975	함수연 (행)4994

시군 어울림마당 운영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위치 : 14개 시·군(대표어울림마당 선정 1개 시·군 제외)

○ 예 산 액 : 134,400천원(국비 57,600, 도비 76,800)

○ 사 업 량 : 14개 시·군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

○ 지원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제61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 어울림마당 운영 336,000천원(국비 57,600, 도비 76,800, 시군비 201,600) ○ 24,000×6개 시·군(계룡, 당진, 금산, 부여, 청양, 태안)=144,000(국비 지원) ○ 24,000×8개 시·군(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서천, 홍성, 예산)=216,000(도비 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A-B)		
계	336,000		360,000	336,000	△24,000		
국 비	57,600		57,600	57,600	-		국고
도 비	76,800		86,400	76,800	△9,600		
시군비	201,600		216,000	201,600	△14,4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17%, 도비 23%, 시군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34,400	134,4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배은경 (행) 4992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기능보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
- 사업 위치 :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 사업 기간 : 2020. 6.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도비 25,000)
- ※ 중감 사유 : 김동일의원 지역현안 건의사업으로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코자 함
1985년도 준공 건물로, 2008년 구 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설 노후로 안전점검 지적사항 다수 발생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 추진
- 지원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 50,000천원(도비 25,000, 시군비 25,000) · 건물 외부 균열 보수 10,000천원×1식=10,000천원 · 건물 내부 전면 도색 20,000천원×1식=20,000천원 · 방화구획 개선 15,000천원×1식=15,000천원 · 화장실 수리수선 5,000천원×1식=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50,000	50,000		
국 비	-		-				
도 비	25,000		-	25,000	25,000		
시군비	25,000		-	25,000	2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이지수 (행) 4990

청소년수련시설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정책사업	청소년보호및육성
	단위사업	청소년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청소년수련시설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지원하여 시설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활동의 질적 향상
- 사업 위치 : 시·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55,480천원**(국비 255,480)
- ※ 증감 사유 : 아산시 문화의집(신설) 청소년지도사 1인 인건비 반영으로 확정내시 금액 반영
- 사 업 량 : 21명(수련관 10, 문화의집 1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시군(계룡시, 금산군 제외)
- 사업 내용 : 시·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21명) 1인 인건비 지원
- 지원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소년수련시설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510,960천원(국비 255,480, 시군비 255,480) ○ 9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기본급) · 22,980천원 × 9명 = 206,820천원 ○ 8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기본급, 정규직전환수당) · 25,740천원 × 8명 = 205,920천원 ○ 3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기본급, 정규직전환수당(복지포인트 제외)) · 25,340천원 × 3명 = 76,020천원 ○ 1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기본급) · 22,200천원 × 1명 = 22,2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10,960	0	488,760	510,960	22,200		
국 비	255,480		244,380	255,480	11,100		기금
도 비							
시군비	255,480		244,380	255,480	11,100		
기 타							

* 보조율 : 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12,700	212,7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이지수 (행) 4990

충청남도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사업	청소년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청소년정책 개발 및 수립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급변하는 정책환경속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부각 및 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으로 진로 다변화,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다양화 돼가고 있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 사회 중심의 대책 마련 필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역
- 사업 기간 : 2020. 6. ~ 2020. 11.
- 예 산 액 : 50,000천원(도비 50,000)
- 사 업 량 : 연구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충남연구원
- 사업 내용
 - 충청남도 청소년현황 및 정책환경 분석
 - 충청남도 청소년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분석 및 요구파악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계획수립
 -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연계를 위한 대책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호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을 통한 도정정책 개발, 제도개선, 시책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50,000천원 ○ 내부 인건비 : 33,741천원 · 책임연구원(6,459천원) · 연구원(12,382천원) · 연구보조원(14,899천원) ○ 소요경비 : 7,640천원 · 예비(1,144천원) · 도서인쇄비(3,646천원) · 회의운영비(2,700천원) · 교통통신비(150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1,862천원) ○ 이윤 및 부가가치세 : 8,689천원 · 이윤(4,138천원) · 부가가치세(4,55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0	50,000	5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50,000			50,000	5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2040	양승주 (행) 4975	함수연 (행) 4994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 서비스 지원, 청소년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65,676천원(도비 565,676)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공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사업 내용 : 고위기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도,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청소년정책기능강화, 청소년전화1388운영,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보고대회
- 추가요구사유
 -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방청소년상담사업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증액 수준을 평가(여성가족부) 받음
 - 또한 해당 예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인건비(상승분)를 보존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5% 예산 편성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정적 운영을 지원 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자료(여성가족부)>

평가지표	I -가-6) 예산지원의 적정성 (시도 2점 / 시군구 2점)		
평가영역	I. 위기청소년 지원기반 조성 (시도 16점 / 시군구 16점)		
평가항목	I -가 지자체의 지원기반 확대 (시도 11점 / 시군구 11점)		
세부지표	I -가-6) 예산지원의 적정성 (시도 2점 / 시군구 2점)		
지표유형	정량지표	평가대상	시도 및 시군구센터
평가목적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방청소년상담사업비 안정적 확보 및 증액 수준을 평가		
평가기간	2017년 - 2019년		
평가요소	3년간('17년-'19년) 전체 지방청소년상담사업비 증가 정도		
평가기준	구분	기준	배점
	S	105% 이상	2점
	A	100% 초과 - 105% 미만	1.5점
	B	예산 동결	0.5점
	C	예산 삭감	0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추진 : 565,676천원 (도비 565,676) ○ 인건비: 389,379천원 - 급여(기본급, 수당, 사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8명) 357,519,000 - 389,379,000 = 31,860 ○ 운영비: 23,897천원 ○ 사업비: 152,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65,676	0	533,816	565,676	31,86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565,676		533,816	565,676	31,860		계속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39,040	539,04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함수연 (행) 4994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시설구축 운영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직업역량계발을 통한 건강한 사회 진출 및 자립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0천원(도비 200,000)
- ※ 중감 사유 : 본예산 의무절감 사업에 대해 미 반영된 인건비 20백만원 증액 요구
 - 진로직업체험공간 무기계약근로자 3명 보수
-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본예산 부족분 반영
- 사 업 량 : 진로직업체험공간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공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사업 내용 : 충남 거점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공간 설립·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진로상담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창업지원 등
- 지원 근거 : 도-교육청 간 교육상생협력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시설구축 운영 300,000천원(도비 200,000, 교육청비 100,000) ○ 인건비_기간제 근로자 보수 : 142,939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급량, 교통, 가족 포함) 88,452천원×1식(3명)=88,452 · 제수당(시간외, 복지포인트 등) 28,017천원×1식(3명)=28,017 · 법정부담금 14,236천원×1식(3명)=14,236 · 퇴직급여 12,234천원×1식(3명)=12,234 ○ 운영비 : 56,061천원 · 출장비 : 3,000천원 · 운영물품 및 임차료 : 51,438천원 · 공공요금및제세 : 1,623천원 ○ 사업비 : 101,000천원 · 재료비 및 행사홍보비 : 1,000천원 · 홍보사업 3,500천원 · 진로체험, 진로지원,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 60,500천원 · 인큐베이팅 카페 : 15,000천원 진로공모전, 성장발표전 : 2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0	280,000	300,000	20,000		
국 비	0		-				
도 비	200,000		180,000	200,000	20,000		
시군비	-		-				
기 타	100,000		100,000	100,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0	200,0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이지수 (행) 4990

학교밖세상소통카드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학교박세상소통카드 : 70,000천원 (도비 70,000) ○ 만 9 ~24세 : 월 5만원(최대 20만원) * 1,280명 = 64,000천원 ○ 시스템 이용료(단말기 포함) : 2,475천원 ○ 교통카드 제작비 : 2,662천원 ○ 홍보비 및 사업설명회 : 86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0,000	0	50,000	70,000	20,000		
국 비	0		-				
도 비	70,000		50,000	70,000	20,000		
시군비			-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	50,0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이지수 (행) 4990

청소녀성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기능 보강 및 임차료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비 중 운영비 부족분을 지방비로 편성하여 사업 내실화
- 사업 위치 : 고정형 2개소(천안, 홍성), 이동형1개소(예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
- ※ 증감 사유 :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찾아가는 성교육 수입 감소를 고려하여 사업비 증액
- 사 업 량 : 3개소(고정형성문화센터 2, 이동형성문화센터 1)
- 사업시행방법 : 공공기관 대행,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충청지부
- 사업 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일부 지원
- 지원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30,000천원(도비 30,000) ○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고정형) 10,000천원 · 공과금 등 월 운영비 833천원×12개월 = 10,000천원 ○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고정형) 10,000천원 · 공과금 등 월 운영비 833천원×12개월 = 10,000천원 ○ 예산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10,000천원 · 공과금 등 월 운영비 833천원×12개월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0	30,000	30,000		
국 비	-		-				
도 비	30,000		-	30,000	30,000		
시군비	-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이지수 (행) 499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비 중 운영비 부족분을 지방비로 편성하여 사업 내실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5,000천원(도비 85,000)
- ※ 중감 사유 : 국-시군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칭사업비 부족으로, 2015년도부터 도-시군비 추가 예산 편성됨. '19년도 부여센터 신설되었으나 예산 증액 반영되지 않았으며('15~'19년도 동일예산), 신규 센터 건립 및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증액 필요
- 사 업 량 : 1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사업 내용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비 일부 지원
- 지원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총사업비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283,330천원(도비 85,000, 시군비 198,330) ・ 15개 시군 센터x18,888천원=283,33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83,330	0	190,000	283,330	93,330		
국 비	-		-				
도 비	85,000		57,000	85,000	28,000		
시군비	198,330		133,000	198,330	65,33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0,000	80,0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이지수 (행) 4990

청소년자율소통플라자 그린카페조성 사업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여가활동과 더불어 진로·성격·대인관계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복합 공간을 구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복지회관
- 사업 기간 : 2020. 6. ~ 2020. 12.(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75,000천원** (도비 75,000천원)
- 사 업 량 : 그린카페 조성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 사업 내용 :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 개인 및 집단 상담공간 등 조성 운영
- 지원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제40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그린카페(청소년자율소통 플라자) : 150,000천원(도비 75,000천원 시군비 75,000) ○ 1개소 150,000천원×1개소 =150,000 (임대비, 시설보강, 자산취득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150,000	150,000		신규
국 비							
도 비	75,000			75,000	75,000		
시군비	75,000			75,000	7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E=A-B-C)	비 고
	신	규	사	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함수연 (행) 4994

청소년 쉼터 운영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산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출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비행 예방,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홍성군
- 사업 기간 : 2020. 1. 1.~2020. 12. 31.
- 예 산 액 : **1,190,969천원**(국비 1,190,969)
- ※ 증감 사유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4개 시군, 10개 청소년쉼터(천안시 4, 아산시 2, 공주시 2, 홍성군 2)
- 사업 내용 : 생활보호,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16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소년 쉼터 운영 : 2,381,938천원 (국비 1,190,969, 시군비 1,190,969) ○ 천안 4개소 : 운영비 등 1,004,790천원 ○ 공주 2개소 : 운영비 등 425,400천원 ○ 아산 2개소 : 운영비 등 503,812천원 ○ 홍성 2개소 : 운영비 등 447,93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381,938		2,127,464	2,381,938	254,474		
국 비	1,190,969		1,063,732	1,190,969	127,237		기금
도 비	-		-	-	0		
시군비	1,190,969		1,063,732	1,190,969	127,237		
기 타	-	-	-	-	0		

* 보조율 : 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73,270	873,27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7년 (2018~2022)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육소현 (행) 4991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사업 위치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 사업 기간 : 2020. 1. 1.~2020. 12. 31.(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23,190천원(도비 23,190)

※ 증감 사유

- 2020년 예산 편성 시 2019년 인원 기준으로 편성하여, 2020년 기존 36명에서 49명으로 13명 증원되어 발생한 추가비용임

경력	당초	변경
3년 미만	19명	28명
3~5년 미만	8명	6명
5년 이상	9명	15명
합계	36명	49명

- 사업 량 :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 사업 내용 :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77,300천원(도비 23,190 시군비 54,110) - 지원기준 : 근무년수 3년미만 100천원, 3~5년미만 150천원, 5년이상 180천원 ○ 3년 미만 : 100천원×12개월×27명 + 100천원×2개월×1명= 32,600천원 ○ 3년 이상~5년 미만 : 150천원×12개월×6명 + 150천원×10개월×1명=12,300천원 ○ 5년 이상 : 180천원×12개월×15명=32,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2,838		56,640	77,300	57,678		
국 비					0		
도 비	23,190		16,992	23,190	6,198		
시군비	39,648		39,648	54,110	14,462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328	11,328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육소현 (행) 4991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건강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건강하고 바른 성장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51,000천원**(국비 234,000, 도비 117,000)
 - ※ 감액 사유 :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반영
- 사 업 량 : 15개 시군 4,644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468,000천원(국비 234,000, 도비 117,000, 시군비 117,000)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대상자(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644	468,000	234,000	117,000		117,000
	천안시	1,195	119,064	59,532	29,766		29,766
	공주시	305	30,688	15,344	7,672		7,672
	보령시	286	28,712	14,356	7,178		7,178
	아산시	702	70,584	35,292	17,646		17,646
	서산시	295	28,908	14,454	7,227		7,227
	논산시	464	46,136	23,068	11,534		11,534
계룡시	59	7,156	3,578	1,789	1,789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당진시	224	22,176	11,088	5,544	5,544	
	금산군	170	17,720	8,860	4,430	4,430	
	부여군	212	20,988	10,494	5,247	5,247	
	서천군	119	11,980	5,990	2,995	2,995	
	청양군	69	7,856	3,928	1,964	1,964	
	홍성군	224	23,164	11,582	5,791	5,791	
	예산군	170	17,424	8,712	4,356	4,356	
	태안군	150	15,444	7,722	3,861	3,86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A-B)		
계	468,000		494,000	468,000	△26,000		
국 비	234,000		247,000	234,000	△13,000		국고
도 비	117,000		123,500	117,000	△6,500		
시군비	117,000		123,500	117,000	△6,5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87,000	387,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배은경 (행) 4992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 170,958천원(국비 85,479, 시군비 85,479)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4천원 × 42,740식 = 170,95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70,958	0	0	170,958	170,958		신규
국 비	85,479		-	85,479	85,479		기금
도 비							
시군비	85,479		-	85,479	85,479		
기 타							

* 보조율 : 기금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이지수 (행) 4990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교구 교체 지원	정책사업	청소년보호및육성
	단위사업	청소년자립지원및보호
	세부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교구 교체 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노후 교재교구 교체를 지원하여 원활한 체험관 성교육 운영
- 사업 위치 : 천안 청소년성문화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500천원**(국비 2,500)
- ※ 증감 사유 :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비 확정되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천안 청소년성문화센터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공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사업 내용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시청각적 체험관 운영으로 청소년 성교육 효과 극대화
- 지원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교구 교체 지원 : 2,500천원(국비 2,500) ○ 교재교구 구입 · 2,500천원 × 1식 = 2,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00	0	0	2,500	2,500		신규
국 비	2,500		-	2,500	2,500		기금
도 비							
시군비			-				
기 타							

* 보조율 :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조광희 (행) 2040	양승주 (행) 4975	이지수 (행) 4990